'e편한세상 평내'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 08. 29.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남양주시는 물론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남양주시 거주신청자가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hoapt21.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제34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60일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공동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검수 (계약체결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일정	09월 03일(화)	09월 04일(수)	09월 05일(목)	09월 11일(수)	09월 19일(목) ~ 09월 22일(일)	09월 23일(월) ~ 09월 25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t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당사 주택전시관 방문 (10:00 ~ 17:00)	당사 주택전시관 방문 (10:00 ~ 16:00)
장소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당사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검수접수 과열 시 일정 및 운영은 변경될 수 있음.	• 당사 주택전시관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169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주택전시관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 - 11025호(2019.08.2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03-2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7~27층 15개동 / 총 1,108세대(조합원분 820세대, 임대41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24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24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24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50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7세대 포함]
■ 주차장높이 : 유효높이 2.3M(택배차량 출입불가)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계		
민영주택	2019000780	01	053.9871	53	53.9871	19.1398	73.1269	29.2484	102.3753	26.4917	42	4	4	8	1	17	25	0
		02	059.9917A	59A	59.9917	20.8490	80.8407	32.5016	113.3423	29.2862	93	9	9	19	3	40	53	7
		03	059.9958B	59B	59.9958	21.7465	81.7423	32.5037	114.2460	29.6128	15	1	1	3	1	6	9	0
		04	059.9615C	59C	59.9615	21.4580	81.4195	32.4852	113.9047	29.4959	11	1	1	2	0	4	7	0
		05	084.9753A	84A	84.9753	22.4621	107.4374	46.0368	153.4742	38.9214	12	1	1	2	0	4	8	1
		06	084.9878B	84B	84.9878	23.7643	108.7521	46.0437	154.7958	39.3977	35	4	4	7	1	16	19	2
		07	084.9937C	84C	84.9937	23.0234	108.0171	46.0469	154.0640	39.1314	39	4	4	9	1	18	21	2
	합 계										247	24	24	50	7	105	142	12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달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세대, 원)

주택형	동(라인)	층구분	해당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1차	계약금(10%) 2차	중도금(6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2020.03.20	2020.07.20	2020.11.20	2021.04.20	2021.09.24	2022.01.24	입주지정일
53	108(1,2,3,4)	5-9층	7	113,460,210	165,739,790	279,200,000	10,000,000	17,920,000	27,920,000	27,920,000	27,920,000	27,920,000	27,920,000	27,920,000	83,760,000
		10층이상	15	113,460,210	171,339,790	284,800,000	10,000,000	18,480,000	28,480,000	28,480,000	28,480,000	28,480,000	28,480,000	28,480,000	85,440,000
	105(4,5) 111(3,4,5,6)	3층	3	113,460,210	159,739,790	273,200,000	10,000,000	1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81,960,000
		4층	3	113,460,210	165,539,790	279,000,000	10,000,000	1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83,700,000
		5-9층	9	113,460,210	171,339,790	284,800,000	10,000,000	18,480,000	28,480,000	28,480,000	28,480,000	28,480,000	28,480,000	28,480,000	85,440,000
		10층이상	5	113,460,210	177,239,790	290,700,000	10,000,000	19,070,000	29,070,000	29,070,000	29,070,000	29,070,000	29,070,000	29,070,000	87,210,000
59A	106(1,2) 107(1,2,3,4) 109(1,2,3,4) 114(1,2) 115(1,2)	1층	4	125,403,390	157,996,610	283,400,000	10,000,000	18,340,000	28,340,000	28,340,000	28,340,000	28,340,000	28,340,000	28,340,000	85,020,000
		2층	3	125,403,390	164,296,610	289,700,000	10,000,000	18,970,000	28,970,000	28,970,000	28,970,000	28,970,000	28,970,000	28,970,000	86,910,000
		3층	7	125,403,390	170,596,610	296,000,000	10,000,000	1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88,800,000
		4층	6	125,403,390	176,896,610	302,300,000	10,000,000	20,230,000	30,230,000	30,230,000	30,230,000	30,230,000	30,230,000	30,230,000	90,690,000
		5-9층	13	125,403,390	183,196,610	308,600,000	10,000,000	20,860,000	30,860,000	30,860,000	30,860,000	30,860,000	30,860,000	30,860,000	92,580,000
		10층이상	20	125,403,390	189,496,610	314,900,000	10,000,000	21,490,000	31,490,000	31,490,000	31,490,000	31,490,000	31,490,000	31,490,000	94,470,000
	101(1,2) 102(1) 111(1) 112(1,4,5) 113(3,5,6)	1층	2	125,403,390	163,796,610	289,200,000	10,000,000	18,920,000	28,920,000	28,920,000	28,920,000	28,920,000	28,920,000	28,920,000	86,760,000
		2층	2	125,403,390	170,196,610	295,600,000	10,000,000	19,560,000	29,560,000	29,560,000	29,560,000	29,560,000	29,560,000	29,560,000	88,680,000
		3층	3	125,403,390	176,596,610	302,000,000	10,000,000	2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90,600,000
		4층	3	125,403,390	182,996,610	308,400,000	10,000,000	20,840,000	30,840,000	30,840,000	30,840,000	30,840,000	30,840,000	30,840,000	92,520,000
		5-9층	14	125,403,390	189,496,610	314,900,000	10,000,000	21,490,000	31,490,000	31,490,000	31,490,000	31,490,000	31,490,000	31,490,000	94,470,000
		10층이상	16	125,403,390	195,896,610	321,300,000	10,000,000	22,130,000	32,130,000	32,130,000	32,130,000	32,130,000	32,130,000	32,130,000	96,390,000
59B	102(2) 105(1,2) 112(2) 113(1,2)	4층	1	124,310,550	181,389,450	305,700,000	10,000,000	20,570,000	30,570,000	30,570,000	30,570,000	30,570,000	30,570,000	30,570,000	91,710,000
		5-9층	8	124,310,550	187,789,450	312,100,000	10,000,000	21,210,000	31,210,000	31,210,000	31,210,000	31,210,000	31,210,000	31,210,000	93,630,000
		10층이상	6	124,310,550	194,189,450	318,500,000	10,000,000	21,850,000	31,850,000	31,850,000	31,850,000	31,850,000	31,850,000	31,850,000	95,550,000
59C	105(3) 112(3)	2층	1	126,301,080	171,498,920	297,800,000	10,000,000	19,780,000	29,780,000	29,780,000	29,780,000	29,780,000	29,780,000	29,780,000	89,340,000
		3층	1	126,301,080	177,898,920	304,200,000	10,000,000	20,420,000	30,420,000	30,420,000	30,420,000	30,420,000	30,420,000	30,420,000	91,260,000
		4층	1	126,301,080	184,398,920	310,700,000	10,000,000	21,070,000	31,070,000	31,070,000	31,070,000	31,070,000	31,070,000	31,070,000	93,210,000
		5-9층	3	126,301,080	190,898,920	317,200,000	10,000,000	21,720,000	31,720,000	31,720,000	31,720,000	31,720,000	31,720,000	31,720,000	95,160,000
		10층이상	5	126,301,080	197,298,920	323,600,000	10,000,000	22,360,000	32,360,000	32,360,000	32,360,000	32,360,000	32,360,000	32,360,000	97,080,000
84A	103(1,2) 104(4,5) 110(5,6)	2층	1	158,735,010	215,464,990	374,200,000	10,000,000	27,42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112,260,000
		3층	3	158,735,010	223,564,990	382,300,000	10,000,000	28,230,000	38,230,000	38,230,000	38,230,000	38,230,000	38,230,000	38,230,000	114,690,000
		5-9층	2	158,735,010	239,864,990	398,600,000	10,000,000	29,860,000	39,860,000	39,860,000	39,860,000	39,860,000	39,860,000	39,860,000	119,580,000
		10층이상	6	158,735,010	247,964,990	406,700,000	10,000,000	30,670,000	40,670,000	40,670,000	40,670,000	40,670,000	40,670,000	40,670,000	122,010,000
84B	104(1,2) 110(2,3)	2층	2	157,486,050	214,563,950	372,050,000	10,000,000	27,205,000	37,205,000	37,205,000	37,205,000	37,205,000	37,205,000	37,205,000	111,615,000
		3층	1	157,486,050	221,813,950	379,300,000	10,000,000	27,930,000	37,930,000	37,930,000	37,930,000	37,930,000	37,930,000	37,930,000	113,790,000
		4층	2	157,486,050	229,913,950	387,400,000	10,000,000	28,740,000	38,740,000	38,740,000	38,740,000	38,740,000	38,740,000	38,740,000	116,220,000
		5-9층	11	157,486,050	237,913,950	395,400,000	10,000,000	29,540,000	39,540,000	39,540,000	39,540,000	39,540,000	39,540,000	39,540,000	118,620,000
		10층이상	19	157,486,050	246,013,950	403,500,000	10,000,000	30,350,000	40,350,000	40,350,000	40,350,000	40,350,000	40,350,000	40,350,000	121,050,000
84C	110(1)	3층	1	159,632,700	217,067,300	376,700,000	10,000,000	27,670,000	37,670,000	37,670,000	37,670,000	37,670,000	37,670,000	37,670,000	113,010,000
		5-9층	2	159,632,700	233,167,300	392,800,000	10,000,000	29,28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117,840,000
		10층이상	6	159,632,700	241,167,300	400,800,000	10,000,000	30,080,000	40,080,000	40,080,000	40,080,000	40,080,000	40,080,000	40,080,000	120,240,000
	104(3) 110(4)	1층	1	159,632,700	208,467,300	368,100,000	10,000,000	26,81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110,430,000
		2층	2	159,632,700	216,667,300	376,300,000	10,000,000	27,630,000	37,630,000	37,630,000	37,630,000	37,630,000	37,630,000	37,630,000	112,890,000
		3층	2	159,632,700	224,767,300	384,400,000	10,000,000	28,440,000	38,440,000	38,440,000	38,440,000	38,440,000	38,440,000	38,440,000	115,320,000
		4층	1	159,632,700	232,967,300	392,600,000	10,000,000	29,260,000	39,260,000	39,260,000	39,260,000	39,260,000	39,260,000	39,260,000	117,780,000
		5-9층	10	159,632,700	241,167,300	400,800,000	10,000,000	30,080,000	40,080,000	40,080,000	40,080,000	40,080,000	40,080,000	40,080,000	120,240,000
		10층이상	14	159,632,700	249,367,300	409,000,000	10,000,000	3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122,700,000

■ 공통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자체심의 결과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함. •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등]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할 수 있음.(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 임.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의거)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별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시점 이후 중도금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 할 수 있음.[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부적격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 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비서류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53	59A	59B	59C	84A	84B	84C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1	2	1	0	0	1	1	6
	국가유공자 등 (보훈처 추천)		1	2	0	1	0	1	1	6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1	2	0	0	0	1	1	5
	중소기업 근로자		1	3	0	0	1	1	1	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거주자(50%)		2	4	1	1	1	2	2	13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2	5	0	0	0	2	2	1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6	15	3	2	2	6	7	41
		일반공급(25%)	2	4	0	0	0	1	2	9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1	3	1	0	0	1	1	7
합 계			17	40	6	4	4	16	18	10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 세부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남양주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24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등(보훈처 추천) :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도 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2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의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경쟁이 있을시 남양주시 거주자가 우선함),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수도권에서 경기도 거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자)에게 공급함. 경기도 거주자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신청 미달이 발생되는 잔여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며,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 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은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경기도 거주 신청자가 우선공급 요건 적용되지 않음.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 준	점수	비 고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5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의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주택 기준은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의 경우 입주예정자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7,997,917원	8,646,943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482,177원	7,398,242원	8,039,838원	8,818,669원	9,597,500원	10,376,332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401,815원 ~6,482,177원	6,165,203원 ~7,398,242원	6,699,866원 ~8,039,838원	7,348,892원 ~8,818,669원	7,997,918원 ~9,597,500원	8,646,944원 ~10,376,332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482,178원 ~7,022,358원	7,398,243원 ~8,014,763원	8,039,839원 ~8,709,825원	8,818,670원 ~9,553,558원	9,597,501원 ~10,397,292원	10,376,333원 ~11,241,026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20%를 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에 청약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49,026) * (N-8)) ※ N → 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 입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과세대상 급여액 (비과세 소득 제외)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에 포함하여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7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며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보지 아니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의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동호수결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08.29.)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남양주시 거주자가 우선함.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신청할 경우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illegible] • 1순위 [illegible]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선정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illegible] ※ 청약자 유의사항 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 신청된 청약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신청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당첨된 경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 청 자 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전주택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적용)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illegible]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illegible]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과거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남양주시 / 경기도 서울시, 인천광역시
	2순위	전주택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 분	남양주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록되어 있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9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① 만19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②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아니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illegible]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illegible]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주택전시관)가 가능함. [illegible]

Ⅳ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특별공급 신청 일정, 방법,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19.09.03(화) (인터넷청약 : 08:00~17:30) (방문접수 : 10:00~14:00)	• 인터넷 청약 (APT2you)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방문접수 : 인터넷청약 불가한 신청자(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만 65세 이상자)에 한해 주택전시관 방문접수(단, 신청서류 미비시 방문접수 불가)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이전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구비서류 (현장접수 시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시는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기간에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증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www.apt2you.com)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의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하단 참고)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주택전시관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주택전시관에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인 경우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8.29.)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택전시관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전년도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주택전시관에 비치)	- 접수장소

■ 일반공급 청약 방법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접수일	신청방법
일반공급	1순위	남양주시 / 경기도, 서울시, 인천광역시	2019년 09월 04일(수요일) 08:00~17:30	■ 인터넷 청약 ■ 금융결제원 청약서비스(KB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가입자) PC(www.apt2you.com) / 모바일(APT2you앱) ■ KB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혹은 모바일뱅킹 ※ 청약통장 참가은행(15개) : 기업, KB국민, 우리,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 아래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남양주시 / 경기도, 서울시, 인천광역시	2019년 09월 05일(목요일) 08:00~17:3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이전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KB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KB국민은행(KB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 「주택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시간의 17:30분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순위에서 청약자격(해당 주택 청약통장 가입 여부 및 지역별 예치금 충족 여부 등)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청약자가 기재하는 사항에 따라 청약신청을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신청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오니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주거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 확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 비 사 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동일 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표등본 1통/분리세대 구성 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청약자 본인 서류임을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신청된 청약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이 가능하며, 주택공급신청서에 본인이 작성한 서명은 인장 없이 취급하는 경우 본인 직접 기재에 한함.

Ⅴ 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구비서류

■ 당첨자발표 일정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 2019. 09.11.(수)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illegible]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 하지 않습니다. [illegible]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9.09.11 (수) ~ 2019.09.20 (금) (10일간)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 조회」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전화(ARS)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서비스 종료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제공일시	2019.09.11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illegible]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illegible]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아래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자 당첨 여부 확인 바랍니다. [illegible]

제출기간	• 일시 : 2019.09.19(목) ~ 2019.09.22.(일) 10:00~17:00 • 대상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제출장소	• 당사 주택전시관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169번지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 제출 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비 사항
일반공급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본인(배우자 분리세대)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당첨자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자격의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
		○	무주택소명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당사 주택전시관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8.2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은 공급신청 위임서류는 서명사실 증명서로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일정

구 분	신청대상자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 2019. 09.23.(월) ~ 2019. 09.25.(수) (10:00~16:00) • 장소 - 'e편한세상 평내' 주택전시관 (주소 : 남양주시 호평동 169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함.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illegible]

■ 계약시 구비서류
•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한 당첨자 분께서는 계약기간 내 아래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되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셔는 분은 구비서류와 같이 소명자료 제출)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함.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계약시	① 계약금 입금증(납부영수증) (※ 계약금 현장 수납 불가)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③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진행불가
제3자 대리 계약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④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에 비치) ⑤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⑥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⑦ 대리인의 인장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수협은행	1010-1195-7614	평내2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식회사삼호

※ 상기 입금계좌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 하시기 바람(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지정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 및 연체료 등의 내용은 공급계약서를 따르며, 계약자 성명 기재하지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입금증은 계약 체결 시 지참요망(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계약자 대출 안내
[illegible]

Ⅵ 추가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 원, VAT포함)

주 택 형(타입)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일정 계약금10%(계약시)	중도금10%(2020.03.20)	잔금80%(입주지정일)	비고
53	6,000,000	600,000	600,000	4,800,000	
59A	6,200,000	620,000	620,000	4,960,000	
59B	7,500,000	750,000	750,000	6,000,000	
59C	7,400,000	740,000	740,000	5,920,000	
84A	9,100,000	910,000	910,000	7,280,000	
84B	9,900,000	990,000	990,000	7,920,000	
84C	9,800,000	980,000	980,000	7,840,000	

■ 유의사항
[illegible]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하나은행	231-910025-64604	㈜삼호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착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 기타 유상옵션 품목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시공사 주식회사 삼호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주택전시관(분양사무소)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로 진행되는 사항이며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함.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음.

1. 추가 선택품목 설치비
◎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주택형	제조사	구분	설치위치	냉방면적 및 실외기용량	설치대수	판매가 일반형	판매가 고급형(공기청정기능추가)	비고
시스템 에어컨	53	LG	ALT-1	거실(주방)+안방	거실/주방(15평)+안방(5평)/실외기(3HP)	2	3,300,000	3,800,000	
			ALT-2	거실(주방)+안방+침실1	거실/주방(15평)+안방(5평)+침실1(5평)/실외기(3HP)	3	4,500,000	5,250,000	
			ALT-3	거실(주방)+안방+침실2	거실/주방(15평)+안방(5평)+침실2(5평)/실외기(3HP)	3	4,500,000	5,250,000	
			ALT-4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거실/주방(15평)+안방(5평)+침실1(5평)+침실2(5평)/실외기(4HP)	4	5,800,000	6,800,000	
	59A	LG	ALT-1	거실(주방)+안방	거실/주방(15평)+안방(5평)/실외기(3HP)	2	3,300,000	3,800,000	
			ALT-2	거실(주방)+안방+침실1	거실/주방(15평)+안방(5평)+침실1(5평)/실외기(3HP)	3	4,500,000	5,250,000	
			ALT-3	거실(주방)+안방+침실2	거실/주방(15평)+안방(5평)+침실2(5평)/실외기(3HP)	3	4,500,000	5,250,000	
			ALT-4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거실/주방(15평)+안방(5평)+침실1(5평)+침실2(5평)/실외기(4HP)	4	5,800,000	6,800,000	
	59B	LG	ALT-1	거실(주방)+안방	거실/주방(15평)+안방(5평)/실외기(3HP)	2	3,300,000	3,800,000	
			ALT-2	거실(주방)+안방+침실1	거실/주방(15평)+안방(5평)+침실1(5평)/실외기(3HP)	3	4,500,000	5,250,000	
			ALT-3	거실(주방)+안방+침실2	거실/주방(15평)+안방(5평)+침실2(5평)/실외기(3HP)	3	4,500,000	5,250,000	
			ALT-4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거실/주방(15평)+안방(5평)+침실1(5평)+침실2(5평)/실외기(4HP)	4	5,800,000	6,800,000	
	59C	LG	ALT-1	거실(주방)+안방	거실/주방(15평)+안방(5평)/실외기(3HP)	2	3,300,000	3,800,000	
			ALT-2	거실(주방)+안방+침실1	거실/주방(15평)+안방(5평)+침실1(5평)/실외기(3HP)	3	4,500,000	5,250,000	
			ALT-3	거실(주방)+안방+침실2	거실/주방(15평)+안방(5평)+침실2(5평)/실외기(3HP)	3	4,500,000	5,250,000	
			ALT-4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거실/주방(15평)+안방(5평)+침실1(5평)+침실2(5평)/실외기(4HP)	4	5,800,000	6,800,000	
	84A	LG	ALT-1	거실(주방)+안방	거실/주방(18평)+안방(6평)/실외기(3HP)	2	3,500,000	4,000,000	
			ALT-2	거실(주방)+안방+침실1	거실/주방(18평)+안방(6평)+침실1(5평)/실외기(4HP)	3	4,700,000	5,450,000	
			ALT-3	거실(주방)+안방+침실2	거실/주방(18평)+안방(6평)+침실2(5평)/실외기(4HP)	3	4,700,000	5,450,000	
			ALT-4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거실/주방(18평)+안방(6평)+침실1(5평)+침실2(5평)/실외기(5HP)	4	6,000,000	7,000,000	
	84B	LG	ALT-1	거실(주방)+안방	거실/주방(18평)+안방(6평)/실외기(3HP)	2	3,500,000	4,000,000	
			ALT-2	거실(주방)+안방+침실1	거실/주방(18평)+안방(6평)+침실1(5평)/실외기(4HP)	3	4,700,000	5,450,000	
			ALT-3	거실(주방)+안방+침실2	거실/주방(18평)+안방(6평)+침실2(5평)/실외기(4HP)	3	4,700,000	5,450,000	
			ALT-4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거실/주방(18평)+안방(6평)+침실1(5평)+침실2(5평)/실외기(5HP)	4	6,000,000	7,000,000	
	84C	LG	ALT-1	거실(주방)+안방	거실/주방(18평)+안방(6평)/실외기(3HP)	2	3,500,000	4,000,000	
			ALT-2	거실(주방)+안방+침실1	거실/주방(18평)+안방(6평)+침실1(5평)/실외기(4HP)	3	4,700,000	5,450,000	
			ALT-3	거실(주방)+안방+침실2	거실/주방(18평)+안방(6평)+침실2(5평)/실외기(4HP)	3	4,700,000	5,450,000	
			ALT-4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거실/주방(18평)+안방(6평)+침실1(5평)+침실2(5평)/실외기(5HP)	4	6,000,000	7,000,000	

▸ 본공사시 제공되는 냉매배관은 53, 59A, 59B, 59C형 거실 및 침실1에만 제공되며, 84A, 84B, 84C형은 해당 부위에 냉매슬리브가 설치됩니다. 또한 설치위치는 공사여건을 고려하여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illegible]

◎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주택형	제조사	모델명	설치대수	판매단가	비 고
빌트인 냉장고	전타입	LG전자	S711SI24B(일반형)	1	5,750,000	가구패널 마감 없음
			S691SI34BS2(고급형)	1	7,65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53, 59A, 59C	LG전자	K221PR14BR/L	1	1,700,000	키큰인출장(W : 400) + 가구도어 마감공사비 포함
	59B			1	1,200,000	가구도어 마감공사비 포함
	84A, 84B, 84C			1	1,850,000	키큰인출장(W : 600) + 가구도어 마감공사비 포함
빌트인 하이브리드 쿡탑	전타입	LG전자	BEY3GT1(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1	1,100,000	전기콘센트 등 공사비 포함
		SK매직	GRA-BI320H(가스1구/인덕션2구)	1	800,000	

▸ 빌트인 냉장고 공급단가 :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일반 냉장고 수납장(상부장 설치)과의 차인액 반영 ▸ 빌트인 김치냉장고 공급단가(53, 59A, 59C, 84A, 84B, 84C) :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상부장 설치)과의 차인액 반영 ▸ 빌트인 김치냉장고 공급단가(59B) :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키큰수납장과의 차인액 반영
▸ 빌트인 하이브리드 쿡탑 공급단가 : 기존 3구 가스쿡탑 공급단가 차감 금액 ▸ 빌트인 냉장고는 별도의 가구패널 마감이 설치되지 않음

◎ 현관중문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주택형	제조사	내용	마감사항	판매단가
현관중문	53	LG하우시스	3연동 슬라이딩	알루미늄/브론즈 투명 접합유리	1,550,000
	59A	LG하우시스	3연동 슬라이딩	알루미늄/브론즈 투명 접합유리	1,550,000
	59B	LG하우시스	3연동 슬라이딩	알루미늄/브론즈 투명 접합유리	1,550,000
	59C	LG하우시스	양개 여닫이	알루미늄/브론즈 투명 접합유리	1,700,000
	84A	LG하우시스	3연동 슬라이딩	알루미늄/브론즈 투명 접합유리	1,550,000
	84B	LG하우시스	3연동 슬라이딩	알루미늄/브론즈 투명 접합유리	1,550,000
	84C	LG하우시스	양개 여닫이	알루미늄/브론즈 투명 접합유리	1,700,000

▸ 현관중문은 시공상 중문틀 또는 벽체마감 다소 이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발생할 수 있음. ▸ 현관중문 옵션 미선택시 벽체패널 및 도배지(천장지 포함)로 마감됨.
▸ 현관중문 옵션 미선택시 천장몰딩, 가구, 디딤판, 벽체널, 건식벽의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현관중문 개폐방향은 해당세대에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하나은행	231-910025-65204	㈜삼호

[illegible]

◎ 유의사항
[illegible]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1. 공통
[illegible]

2.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문	목재문(문틀, 문짝, 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PL창호 등	목재문 가틀(사출 및 욕실문 하부실 제외), 발코니내부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디지털도어록
바닥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바닥마감 등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세탁실 바닥방수, 우수선홈통
벽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래핑 및 벽패널류), 발코니벽 도장, 현관 전신경 및 패널마감(해당 주택형), 드레스룸 장(도어 및 선반/해당 주택형), 신발장, 현관수납장(해당 주택형), 화장대(상판 및 거울 포함), 붙박이장(해당 주택형), 경량벽체 등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장, 인테리어마감, 발코니천장도장	커튼박스, 천장틀 위 석고보드, 발코니 천장면처리
욕실	천장, 타일(바닥, 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 각종 수전 등), 샤워부스, 욕실악세서리일체, 욕실장, 바닥배수구커버(트렌치포함), 욕실환풍기, 욕실스피커폰(부부욕실만 적용), 스위치, 콘센트, 비데 등	액체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선/배관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가스쿡탑, 주방액정TV, 음식물탈수기, 각종 빌트인 가전류 등	설비배관, 주방 배기덕트
조명기구	부착/매립/거치형 조명기구 욕실매입등	매입등(욕실매입등 제외),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일반가구 및 기타사항	현관신발장, 시스템장, 워크인 수납장, 거울, 드레스룸, 화장대, 욕실장, 붙박이장, 수전류(발코니, 세탁실) 등	설비배관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주택전시관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함.

3.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53	59A	59B	59C	84A	84B	84C	비고
금액	18,586,500	20,304,750	20,267,667	20,316,000	26,179,000	26,638,000	26,458,000	

4.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illegible]

Ⅶ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당 사는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사전점검 진행절차 :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 전 보수 완료 ⇒ ⑦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 : 2022년 06월말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주예정일이 지연될 수 있으니 지연에 유의 바랍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함.

■ 부대복리시설 :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3개소), 유아놀이터(1개소), 커뮤니티센터(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주민회의실, 관리사무소,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락커·샤워실 등), 휴게소(3개소), 주민운동시설(2개소), 경비실, 방재실 및 MDF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부가세포함/원)

구 분	회사명	감리금액
건축	㈜천일건축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256,688,000
전기	㈜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	663,216,000
통신/소방	㈜세정이에프씨	550,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시행사	시공사
평내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법인등록번호 : 284171-0004413)	주식회사 삼호 (법인등록번호 : 110111-0163115)

■ 보증안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58,169,860,000 원	제 01222019-101-0003000 호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illegible]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illegible]

■ 아파트 하자보수
- 하자의 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함 - 공동주택관리법 36조, 37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조, 동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적용됨
- 콘크리트에 발생되는 0.2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자연현상으로 하자범위에서 제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규정에 의한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무사항 적용여부)
◎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계획서
-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 무 사 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의 단열재 설치는 비난방공간과 면하는 난방공간의 외벽을 단열조치하여야 한다.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방습층 설치(다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라야 한다.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라야 한다.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 용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 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 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 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설치(다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 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 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65조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음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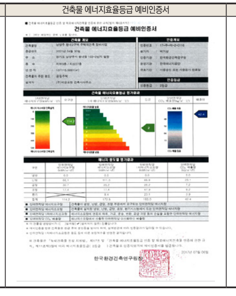	

Ⅷ 유의사항

[illegible]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 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기타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공동사항	[illegible]
주택전시관	[illegible]

■ 설계관련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공동사항		[illegible]
단지	공통	[illegible]
	배치	[illegible]
	주동	[illegible]
	부대시설	[illegible]
	조경	[illegible]
	지하주차장	[illegible]
	주출입구	• 주출입구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정화조 및 공동구 등)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는 3개로(진입 1개로, 진출 2개로), 부출입구는 2개로 설치됩니다.
	기타	[illegible]
단위세대	공통	[illegible]
	발코니/실외기실	[illegible]
	창호	[illegible]
	전기/설비	[illegible]
	기타	[illegible]
건물 입면		[illegible]
단지 외부		[illegible]

■ 기타
[illegible]

Ⅸ 현장 및 주택전시관 안내

■ 주택전시관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169번지
■ 운영기간 : 2019.08.30. 개관일 부터 운영 ■ 운영시간 : 10:00~18:00
■ 현 장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03-2번지 일원
■ 홈페이지 : www.samhoapt21.co.kr ■ 분양문의 : 031)559-3366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주택전시관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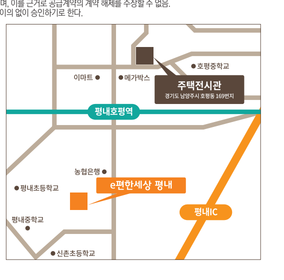

분양문의 031-559-3366
www.samhoapt21.co.kr

■ 시행사 : 평내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공사 : 주식회사 삼호